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7. 20 선고 2018가단3050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

피고1. A

2. B

변론 종결2018. 7. 6.

판결 선고2018. 7. 20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8,484,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07. 12. 1.부터 2008. 2. 14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 단 별지 상 피고 C는 사망하여 이 사건 피고들이

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였다.

2. 인정근거

가. 피고 1: 공시송달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나. 피고 2: 자백간주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오권철

별지